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표시강화 및 표시완화 변경고시

홍성군 고시 제2012 - 141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표시강화 및 표시완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제1조(특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도청이전을 위한 도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2012-113호로 고시된 충남 홍성·예산군 일원의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전지역
2. 면적 : 9,951,729㎡(홍성 : 6,282,602, 예산 : 3,669,127)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강화내용) 특정구역내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설치·표시한다.

1. 광고물 등의 설치량 등

- 가.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로 하며 입체형인 가로형광고물(입체형) 설치·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수량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 1)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 표지 등(‘+’, 약, 싸인볼에 한함)인 돌출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 2)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 3)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 4) 건물 4면 중 2면 이상이 도로변에 직접 접하고 있는 업소가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단, 광장은 도로로 준용한다)
- 5) 별도의 층 및 동일 층에서 업소의 행태가 다를 경우
- 6) 건물별 주민협의를 따라 통일된 패널색 지정과 면적분할이 가능하도록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나. 아케이드 구조인 건물

- 1)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한 건물은 1층에 한하여 가로형광고물 1개 표시 가능
- 2) 아케이드로 조성된 1층 공간은 가로형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업소당 가로·세로 1m(게시틀 포함), 두께 0.3m 크기의 소형 돌출간판 1개 설치가능

다. 건물 상단 및 1층 주출입구 상단에 설치하는 건물명 표시 입체형 간판은 수량에서 제외

라.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 1) 총 설치 수량은 캐노피 3면을 3개의 가로간판으로 보며 캐노피 하단에 현수식 가로간판 1개 이내로 4개를 표시할 수 있으며, 가격표시 간판은 수량에서 제외한다.

2) 캐노피 하단에 매달아 설치하는 가로형광고물의 크기는 가로는 캐노피 폭의 80%, 높이는 0.8m 이내이며, 총량범위내에서 2개로 분할하여 연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지주이용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4) 정유사의 고유 색상을 건물 입면적의 1/3 이내로 적용할 수 있으며 점멸조명이나, 광원을 노출시켜 사용할 수 없다.

다. 주차안내 표지판(Parking)은 수량에서 제외

2.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추가 제한

영 제12조 및 예산군(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광고물 등의 주표기 내용은 업소명이나 브랜드명으로 제한하고, 보조표기 내용에는 지점명·전화번호·인터넷주소·영업내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단, 지주이용간판에는 업소명과 층, 호 표시만 하여야 한다.

나. 광고물의 바탕색은 당해건물의 외벽색채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중·저채도의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커튼월[Curtain Wall(비내력 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 벽면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모양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창틀 또는 구조물에 게시시설을 설치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표시하는 설치가능

라. 광고물의 조명은 간접조명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조명방식,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비 점멸 네온으로 설치·표시할 경우 가능) 다만, 상업 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표시 가능

마. 모든 광고물이나 게시틀(조인트 바) 등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바. 간판에는 실물사진이나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다.

사. 설치·표시 금지 광고물

1) 세로형광고물

2) 공연간판

3) 옥상간판

4) 현수막

5) 애드벌룬

6) 벽보

7) 전단

8) 선전탑

9) 창문이용광고물

아. 표시금지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과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설치·표시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등 법률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광고물

2)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미아찾기, 교통사고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

3)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

3. 광고물 등의 유형별 표시방법 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20까지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가로형광고물

- 1)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쓰이는 해당 층에는 설치금지
- 2) 가로형광고물은 판류형은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2층이하(상업지역 5층, 주거·산업시설지역 3층)에만 설치 가능하며 그 위치는 각층 상단 정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3) 건물의 주출입구 1층상단 및 최상단에는 입체형으로 된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 4) 동일층의 가로형광고물은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전화번호, 체인점표시, 인터넷주소, 지점명 등 가로형광고물 높이가 이내로 2줄로 표시 가능.
- 5) 건물이 도로모퉁이에 위치하여 도로의 꼭각지점에 위치한 업소가 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표시
- 6) 광고물의 가로 크기는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당해 업소 가로폭의 80%이내(최대크기 10m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동일층의 다른 광고물과의 상·하를 일치하게 설치하되 광고물의 높이는 0.6m이내로 한다(게시틀 포함)
- 7) 건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게시틀(조인트 바) 설치 후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게시틀(조인트 바)은 광고물 세로 높이의 3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돌출 폭은 광고물을 포함하여 0.3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8)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픽토그램 등은 동일 게시틀

(조인트 바)내에 가로·세로 크기는 0.7m 이내로 설치 가능

9) 건물 상단에 설치하는 건물명은 1면(상업, 산업시설지역은 2면)에 설치할 수 있으며 광고물의 크기는 세로 0.8m이내 가로는 건물폭의 2분의1 이내로 하며, 건물명 로고는 가로, 세로 1.0m 이내로 한다.

10) 주변경관 및 건물의 외관, 디자인 요소의 이유로 1층의 간판을 분할하여 설치 할 수 있으며 해당간판의 총 면적의 범위내에서 2개까지 분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1) 4~7층 또는 지하업소, 후발입점 업소로 가로형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층이하 공동으로 사용하는 벽면을 활용하여 연립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가) 1개업소의 광고면적은 0.5m^2 (가로1.25m, 세로0.4m)이내이며 총면적은 8m^2 이내로 1개 설치할 수 있다.

나) 광고물의 돌출폭은 0.3m이내이며 층수, 업소의 상호, 상징도형에 한하며 개별간판 면적의 1/2이하로 식별력을 확보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 및 업종, 품목은 표시할 수 없다.

다) 광고물 설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벽면으로 공간이 충분히 확보 된 곳에 설치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까지 사항을 불구하고 종합병원, 대형쇼핑센터, 관광호텔의 건물상단의 건물명과 광고물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가) 글자크기와 건물명 로고는 2.0m 이내로 입체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로고와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단으로 설치

할 수 있다.

나) 광고물의 가로는 건물 폭의 2분의1 이내로 한다.

나. 돌출광고물

- 1)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쓰이는 해당 층에는 설치 금지
- 2) 가로형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해 업소당 1개 설치
- 3) 2층부터 4층까지 설치가능(업무지역은 지상으로부터 3m이상 이격)하며 최상층 또는 주택용도의 층부 부분에는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최상층이 2층인 건물은 2층까지 표시가 가능하다.
- 4)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을 고려하여 건물 전체에 통일된 간판 게시틀을 설치하며, 세로 길이는 건물 한개층 높이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5)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돌출폭, 두께, 가로폭 등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하며, 동일 층수에 2개 이상의 업소가 표시할 경우에는 업소수를 감안 균형있게 배분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6) 건물의 전면폭과 상관없이 1줄만 설치 가능
- 7) 돌출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며 간판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1.2m이내(게시틀 포함), 두께 0.3m이내로 하고 모서리 커브형 및 박스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8)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 표지 등(‘+’, 약, 싸인블)을 설치할 경우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업소 상단 좌·우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세로크기는 0.7m, 지름 0.3m, 바깥쪽 끝부분은 0.5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9) 소형 돌출간판은 상업구역 및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 가능하며, 업소를 상징

하는 예술적 조형물 형태를 권장하며 최대 돌출폭 1.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간판 면적은 0.36m²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주이용광고물

- 1) 단독 지주이용광고물의 설치는 금지한다.
- 2) 지주이용광고물은 주출입구 부근에 5개 이상의 업소가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 당해 부지 내 설치가능하다.
- 3)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4) 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하며 1면의 면적은 3 m² 이내로 해야 하며, 건물 및 가로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5) 연립가로형 광고물이 설치된 업소는 설치 할 수 없다.

4. 광고물 설치계획 수립 등

가. 특정구역 내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신고(『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 내포신도시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내포신도시 시설물에 대한 도 심의 세부운영기준 제4조(시설물의 심의 등)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사전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상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고시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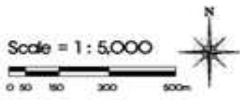
제3조(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조치) 이 고시 규정사항 이외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등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도, 군)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된 의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준용)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제한한 사항 이외의 광고물 등은 「내포신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안)



범례

- 개발예정지구
-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특화형)
- 공동주택(저층형)
- 공동주택(중층형)
- 공동주택(고층형)
- 중심상업
- 특화상업
- 근린상업
- 주상복합
- 행정타운
- 비지니스파크
- 산학협력시설
- 산업시설
- 주차장
- 보행자전용도로
- 공원
- 녹지
- 광장
- 공공공지
- 배수지
- 학교
- 공공청사
- 복합커뮤니티
- 문화시설
- 사회복지시설
- 하천
- 저류지
- 종합의료시설
- 환경플러스터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 종교시설
- 체육시설
- 주유소
- 자동차정비시설
- 집회시설
- 농업관련시설
- 유보지